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48호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로당 외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추가 규정(안 제3조)
- 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hdchfhd@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제4조의2 및 제4조의3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종전의 제3조의2)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등록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미등록경로당은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한정한다.

설>

1. ~ 5. (생략)

② (생략)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조의3 ~ 제13조 (생략)

특경로당 지원은 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 법 제24조제1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3 ~ 제14조 (현행 제3조의3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